

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

바로 알기

신상정보 등록제도란?

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등록·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,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

01 등록 절차

- 01 판결등본 접수**
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송달
- 02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**
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접수
※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신상정보 제출
- 03 등록정보 입력**
등록정보 입력(등록원부 작성)
※ 기한 내 미제출자는 직권등록 후 수사외의
- 04 등록 통지**
정보통신망 이용 열람·통지, 예외적으로 우편 통지
- 05 여성가족부 통보(공개·고지대상)**
공개·고지에 필요한 정보 송부
- 06 등록정보 활용**
성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
- 07 등록 종료**
종료사유 발생 시 폐기

02 신상정보 등록기간



03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

■ 기본신상정보 제출
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(다만,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)

■ 등록정보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 경력 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기간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(키와 몸무게)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(상반신 및 전신) 성범죄 전과 사실
--	---

■ 변경정보 제출

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

■ 해외 출·입국 시 신고의무 사항

-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
-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신고
※ 출국신고서 제출 후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,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

■ 사진 촬영

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

■ 벌칙

-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
→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-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→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04 등록면제 제도

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
※ 최소 등록기간 : 10년은 7년, 15년은 10년, 20년은 15년, 30년은 20년

■ 면제조건

- 선고받은 징역·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
-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·고지명령, 전자장치 부착명령,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
- 부과받은 보호관찰, 사회봉사·수강명령(이수명령)의 집행 완료
-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, 전자장치 부착명령,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

■ 신청서

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또는 형사사법포털(www.kics.go.kr)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

■ 신청방법

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

05 등록정보 열람

·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형사사법포털(www.kics.go.kr)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 가능

06 신상정보 공개·고지

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, 거주지 지역(읍·면·동)의 아동·청소년 보호세대 등에 우편 송부

■ 등록정보 공개제도

‘성범죄자 알림e’ 사이트(www.sexoffender.go.kr)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공개정보 열람 가능
※ 공개정보는 성명, 나이, 주소 및 실제거주지(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), 신체정보(키와 몸무게) 사진,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(판결 일자, 죄명, 선고형량을 포함),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(죄명 및 횟수), 전자장치 부착여부

■ 등록정보 고지제도

- 고지정보는 공개정보와 같고,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 주소 포함
- 고지집행
-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,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
-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등학교, 학교교과교습학원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시설, 읍·면·동사무소(계시판에 30일간 게시)

공개·고지기간

법원의 선고에 의함

- ※ 단,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
- ✓ 3년 초과하는 징역·금고는 10년
- ✓ 3년 이하의 징역·금고 5년
- ✓ 벌금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

07 자주 묻는 질문

- Q**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를 경우 고지되는 주소는?
A 실제거주지(행정동)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에만 고지됩니다.
- Q** 판결문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라는 말도 없는데 잘못 등록된 건 아닌가요?
A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재판사항이 아닌 법률에 따라 당연 발생하므로 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명시가 없더라도 등록의무가 있습니다.
- Q**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고, 언제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?
A 2016. 12. 20. 개정법 시행 이후 선고형량별로 등록기간이 차등화 되어 벌금형의 경우 등록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게 되며, 7년이 경과하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